

Korean Tax Update

April 2020, Issue 70

[조세뉴스]

국세청, 고가아파트 사들이는 부동산 법인 전수 검증 착수, 탈루혐의시 즉시 세무조사 [전문보기]

국세청은 아파트를 사들이고 있는 부동산 법인에 대하여 전수 검증에 착수하였으며, 세금탈루 혐의 발견시 즉시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검증내용은 법인 설립 과정에서 자녀 등에게 편법적인 증여 여부, 고가 아파트 구입 자금의 출처와 동 자금의 형성 과정에서 정당한 세금의 납부 여부, 부동산 법인이 보유 아파트를 매각한 경우 법인세, 주주의 배당소득세 등 관련 세금의 성실 납부 여부 등임.

기획재정부, 코로나 19 긴급 지원을 위한 법인세법 · 조세특례제한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전문보기]

소상공인 등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피해부문에 대한 긴급 지원을 위하여 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등이 신설됨에 따라 각 과세 특례를 신청하기 위한 서식을 정함.

국세청, 코로나 19 피해 납세자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 실시 [전문보기]

국세청은 「세정지원추진단」의 결정으로 국내 정유업체 및 주류업체가 직면하고 있는 급격한 실적 악화로 인한 일시적 자금 부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코로나 19 피해로 세정지원을 신청한 정유업체와 주류업체의 4 월납부분 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 및 주세(교육세포함)에 대한 납부기한을 3 개월 연장함.

[판례]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기 전이라도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 사유로 정한 '국세부와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 개월 미만인 경우'의 판단기준일을 '과세처분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일부국패)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 두 57490 판결

- 사전구제절차로서 과세전적부심사 제도가 가지는 기능과 이를 통해 권리구제가 가능한 범위, 이러한 제도가 도입된 경위와 취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 침해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통제 방법과 더불어, 헌법 제 12 조 제 1 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절차의 원칙은 형사소송절차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세무공무원이 과세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준수하여야 하는 점(대법원 2015 두 52326 등 참조) 등을 고려하여 보면, 구 국세기본법 및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이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거나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이라도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예고 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나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도 전에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과세전적부심사 이후에 이루어져야 하는 과세처분을 그보다 앞서 함으로써 과세전적부심사 제도 자체를 형해화시킬 뿐만 아니라 과세전적부심사 결정과 과세처분 사이의 관계 및 그 불복절차를 불분명하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그와 같은 과세처분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그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라고 할 것임. 따라서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 63 조의 14 제 4 항 단서에서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기 전이라도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 정한 국세기본법 제 81 조의 15 제 2 항 제 3 호에서 말하는 '국세부와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 개월 미만인 경우'인지의 판단 기준일은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 통지를 하는 날'일 뿐 '과세처분일'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과세전적부심사 계속 중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한 경우 과세전적부심사결정 전에 한 과세처분은 당연무효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인용함.

'개발촉진지구'내 사업시행자가 임대한 부동산에서 임차인이 고시된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 해당 부동산을 개발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국패)

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9 두 57916 판결(심리불속행)

- 구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 및 법리는 취득재산의 사용용도가 아니라 취득주체, 즉 법인의 유형을 특정한 다음, 해당 법인의 고유 목적을 위한 재산의 취득에 관하여 법인이 이를 직접 사용하는지 아니면 임대 또는 위탁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인 바, 부동산 취득주체의 인적 특성(특정 유형의 법인 여부)이 아니라 부동산의 사용용도(개발사업의 시행 여부)를 요건으로 하여 취득세를 면제하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 75 조(이 사건 조항)에 관해서도, 사업시행자가 취득한 부동산이 고시된 개발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이기만 하면 취득세가 면제되고, 해당 사업시행자가 스스로 개발사업을 수행하는지 아니면 제 3 자에게 부

동산을 임대 또는 위탁하여 개발사업을 수행하는지 여부는 이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체계정합적인 해석이 되는 점, 또한 사업시행자가 개발촉진지구 내의 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제 3 자에게 임대하고 그 제 3 자가 실제로 해당 부동산을 사용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였다면, 그러한 임대행위는 개발사업 시행을 위해 해당 부동산을 사용하는 하나의 방편으로 볼 수 있으므로 사업시행자의 '임대행위 또는 임대사업'과 개발촉진지구 내에서의 '개발사업'은, 그 중 하나가 성립하면 다른 하나는 성립할 수 없는 모순적인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양립할 수 있는 병존적인 관계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였더라도 임차인이 실제로 개발사업을 수행한 이상 위 건물을 개발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심판례]

청구인이 계약상 잔금지급일(2019.5.31.) 이후인 2019.6.10. 잔금을 지급하였으므로, 2019 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자인 매도인에게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소)

조심 2019 지 2273, 2020. 3. 12.

- 「지방세법」 제7조 제2항에서 '부동산의 취득에 관하여 민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사실상의 취득이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므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 또는 소유권 이전의 형식도 갖추지 아니한 이상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잔금지급일이 도래하였다고 하여도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임(대법원 2009 다5001).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2019.5.23. 취득신고를 하면서 취득일을 2019.6.10.로 기재한 점,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매매대금 000 원을 2019.6.10. 일시에 지급한 사실이 예금계좌의 이체내역에서 확인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은 사실상 잔금지급일에 이 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사실상 취득일이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후이므로 이 건 부동산에 대한 2019년도분 재산세 납세의무가 청구인에게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사업자 간 재화의 차용 및 반환거래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

조심 2019 중 4540, 2020. 3. 24.

- 청구인은 쟁점주유소와의 석유 거래는 동일 물량을 대여하고 이를 현물로 반환받은 대차거래에 불과할 뿐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에서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자 간에 상품·제품·원재료 등의 재화를 차용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하고 동종 또는 이종의 재화를 반환하는 소비대차의 경우도 해당 재화를 차용하거나 반환하는 것을 각각 재화의 공급으로 봄이 타당한 점,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이 최종소비자에게 도달할 때까지 각 유통단계마다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하여 과세하는 단단계 과세방식을 채택하고 있어서 해당 재화의 차용 및 반환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수는 올바른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수적이라 할 수 있고, 이 건 거래는 동일 물량으로 거래하였다 하더라도 유류의 대여 및 반환시 그 시세가 각각 달라서 거래대금이 상이하여 같은 거래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쟁점주유소와의 이 건 거래를 각각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주유소에 경유를 대여하였다가 현물로 반환받은 것을 각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영업권 양도에 따른 무형자산처분이익이 조특법 제 7 조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시 감면대상소득인지 여부 (기각)

조심 2019 광 0461, 2020. 3. 25.

- 청구법인은 조특법 제7조의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이란 감면사업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되는 소득을 말하는 것이고 이 건 영업권도 청구법인의 사업과 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어 쟁점무형자산처분이익도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주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인 점, 법인세법 기본통칙이나 기획재정부 예규 등에서 조특법 제7조 제1항의 '해당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는 고정자산처분이익, 이자수익 등이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이 건의 경우도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이란 여객운송업의 영업활동에서 직접 발생한 소득만을 의미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무형자산처분이익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시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법인이 상표권 사용료를 수취하지 않은 데에 경제적 합리성이 있어 이에 부당 행위계산 부인을 하여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

조심 2018 서 3636, 2020. 3. 25.

-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다른 계열사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받지 아니한 데에는 경제적 합리성이 있어 이에 대해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하여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상표권이란 상표권자의 독점적·배타적 권리로서, 그 상표에는 상표권자가 상당한 자본과 노력, 시간을 투여하여 형성해 온 신용이 화체되어 있어 우리 법제도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을 통해 널리 알려진 재산적 가치가 있는 상표권을 보호하고 있는데, 쟁점상표권이 일반 대중에게 상당히 높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 상표임을 감안한다면, 청구법인이 이를 다른 계열사에게 사용하도록 하면서도 아무런 대가를 수령하지 않은 것이 경제적으로 합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2013.11.1. 000에서 작성한 000 브랜드보고서에서 쟁점상표권의 양수도금액을 산정하였고, 쟁점상표권의 사용효익이 식별되는 계열사들로부터 받을 쟁점상표권 사용에 대한 목표수수료로 해당 계열사들의 매출액에 일정비율을 곱한 금액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2013년부터 2014년까지 특수관계자인 계열사들로부터 사용료를 수취하지 않은 것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비정상적 거래행위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의 정당한 세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쟁점상표권 사용료의 시가는 000가 의뢰하여 외부의 전문기관인 000이 작성한 브랜드보고서의 내용 중 목표추정 로열티율을 적용하여 쟁점상표권의 전체 사용료를 산정하고 이를 쟁점상표권을 공동등록한 10개 계열사별로 안분한 가액이라고 봄이 상당하여(조심 2018서3984·4432, 2019.12.5. 같은 뜻임), 청구법인이 쟁점상표권의 사용료를 미수취한 것에 대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법인의 쟁점채권이 회생법인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주식으로 출자전환된 경우 쟁점채권의 장부가액과 교부받은 주식의 시가와와의 차액을 대손세액 공제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취소)

조심 2019 중 1087, 2020. 3. 30.

- 처분청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4호의2 단서 규정에 의하여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된 주식의 취득가액은 쟁점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하여야 하므로 쟁점채권은 전액 출자전환 신주로 회수된 것이어서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이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은 대손세액공제의 범위와 관련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4호의2 단서의 입법취지는 채권자 법인의 대손 및 채무자 법인의 채무면제이익으로 인한 법인세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이지 채권자 법인의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를 배제하려는 것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 출자전환 주식을 회생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평가할 경우 출자전환시점에서 법인세는 대손금을 손

금산입 못하지만 주식 처분시 처분손실 계상이 가능한 반면, 부가가치세는 채권의 장부가액 전부가 주식으로 변제된 것으로 취급되어 추후 매각되더라도 사실상 대손세액공제가 불가능하게 되는 점,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물론 매출채권 자체마저 회수하지 못한 채권자에게 그 거래징수하지 못한 부가가치세까지 부담하도록 하는 경우 채권자에게만 너무 과도한 부담을 주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매출채권과 관련된 회생채권이 출자전환주식으로 회수되는 경우 대손세액과 관련된 주식의 취득가액은 회생채권의 장부가액으로 보기보다는 출자전환된 시점에서 취득한 주식의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그 시가도 제3투자자의 인수가액인 1주당 000 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매출채권의 장부가액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사실상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되어 그에 관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 대하여는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됨.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채권의 장부가액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을 대손가액으로 하고 이에 상당하는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여 달라는 이 건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법인이 산업단지 내의 공장용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후 공장용 건축물을 증축한 경우 공장부속토지가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

조심 2019 지 2532, 2020. 4. 7.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 가목의 규정을 종합하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국토의 균형발전 및 국가기간산업 및 첨단과학기술산업의 육성 등을 위하여 조성하는 산업단지에 공장건설을 촉진하여 산업단지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도입된 것으로서 산업단지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를 조성한 후 이를 분양받은 자가 당해 공장용지를 취득한 후 공장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경우에 이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취득세 등을 감면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미 취득세를 감면받았던 산업단지 내의 공장용 부동산을 승계취득하는 경우는 산업단지 준공 후 공장설립 촉진이라는 입법목적이 달성된 상태인 점에 비추어 기존의 승계취득 부동산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할 것이지만, 그 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산업용 건축물에 한하여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 따라서 청구법인의 경우 이 건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후, 공장용 건축물을 증축하였던 것으로서 증축한 건축물의 경우에는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지만, 당해 부속토지에 대하여 추가로 감면하는 것은 공장설립 촉진을 위한 감면목적이 달성된 이 건 부동산을 새로이 감면대상으로 삼게 되는 것으로서 이 건 감면규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타당하지 아니함.

[예규]

기업부설연구소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신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계속하여 기업부설연구소로 사용하는 경우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서울세제-16992, 2019. 11. 27.

- 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을 위해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것이므로, 부동산 신탁에 있어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는 것이지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 있어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지 않는다(대법원 2010다84246) 할 것임. 따라서 신탁계약에 따라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수탁자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완전히 취득한 것이 되고, 위탁자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지위를 상실하게 되어 해당 부동산을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신탁 후 해당 부동산을 기업부설연구소로 계속 사용한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임(조심 2017지0263).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새로운 개정기준서(K-IFRS 제 1115 호)의 적용에 따라 회계처리를 변경한 경우 법인세법상 손익 인식 방법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02, 2020. 1. 23.

- ①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던 중, 새로운 개정기준서(K-IFRS 제1115호)의 적용에 따라 건설등의 제공으로 인한 수익과 비용을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과 비용으로 회계처리를 변경한 경우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새로운 개정기준서의 적용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까지 작업진행률에 따라 기간손익을 인식한 금액은 종전의 방식대로 작업진행률에 따라 인식하는 것이며, 작업진행률에 따라 인식하지 않고 남아있는 손익에 대하여만 인도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②새로운 개정기준서(K-IFRS 제1115호) 적용에 따라 총공사예정비에서 진행의 수행정도를 나타내지 못하는 투입물(과대재료비)을 제외하여 작업진행률을 계산하는 경우, 개정 기준서를 적용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 제2항 및 제34조 제3항을 따라 계산하되 작업진행률 계산시에만 과대재료비를 제외하고 계산하는 것이며 계약금액은 과대재료비 부분을 분리하여 계산하지 않는 것임. ③새로운 개정기준서(K-IFRS 제1115호) 적용에 따라 혼재된 공급에 대한 수행의무를 구분하여 재화의 공급과 용역의 공급으로 각각 수익을 인식하는 경우 재화와 용역의 손익의 귀속은 각 수행 의무별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나, 종전의 기준에 따라 새로운 개정기준서의 적용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의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산입한 금액은 종전의 방식에 따르는 것임. ④부동산개발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주택건설사업의 승인을 조건으로 기부하는 자산의 가액을 새로운 개정기준서(K-IFRS 제1115호)의 적용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과 기부

채납을 위한 건설사업 수행의무를 분리하여 각각의 진행률에 따라 수익을 인식한 경우와 관련하여, 주택건설사업의 승인을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자산의 건설은 주택건설사업과 분리하여 그 자체만으로 수익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해당 기부채납을 위한 자산의 건설은 세법상 구분하여 손익을 인식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상표권(브랜드) 사용료 산정 시 일률적으로 내부거래를 제외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액만이 시가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26, 2020. 3. 24.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의2호에 따른 지주회사가 같은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기업집단에, 내부거래가 제외되지 않은 총매출액에 일정 사용료율을 곱하여 산정된 상표권(브랜드) 사용 수수료를 수취하는 경우로서, 동 수수료 산정 방식이 다른 제3의 지주회사들과 그 소속 기업집단 간 일반적으로 통용되어 상당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적용되었고,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거래 관행에 위배되지 않는 등 거래행위의 제반사정을 고려하였을 때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면, 그 수취된 수수료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 89조 제1항에 따른 시가에 해당되는 것이며, 상표권(브랜드) 사용료 산정 시 일률적으로 내부거래를 제외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액만이 시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는 것임.

특별재난지역 선포일 전 및 특별재난지역 외의 지역에 코로나 19 관련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도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24, 2020. 3. 24.

- 특별재난지역 선포일 전에 지출한 기부금 및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외 지역의 코로나19 퇴치를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모두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또한 코로나19 관련 기부금품을 수령하여 자원봉사자 및 의사·간호사의 숙식비, 인건비, 각종 진료소모품 구입비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대도시내 법인이 토지 매입 5년 이내에 본점 사무실, 판매 영업장 및 창고 용도로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해당 건축물이 지방세법 제 13 조 제 1 항에 따른 취득세 중과대상인지 여부

서울세제-4822, 2020. 3. 25.

- 대도시내 법인이 토지 매입 5년 이내에 본점 사무실, 판매 영업장 및 창고 용도로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본점 사무실(부속 토지 포함)은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본점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여 취득세 중과대상이나, 판매 영업장 및 판매장의 부대시설에 해당하는 창고(부속 토지 포함)는 관계법령에 따른 본점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아 취득세 중과대상이 아닌 것으로 사료됨.

부동산 임대용역의 대가를 확정된 후 당해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여 주는 경우 공급가액 산정 방법

서면-2020-부가-1550, 2020. 4. 3.

-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확정된 후 당해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여 주는 경우 부동산 임대업자의 공급가액은 당초 약정된 금액이 되는 것이나, 약정서나 변경계약서 등을 통해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 부동산 임대업자의 공급가액은 변경된 금액이 되는 것임.

본 자료는 일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어떤 기업이나 개인의 특정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 자료의 내용과 관련하여 의사 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당 법인의 전문가와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KPMG 삼정회계법인

Tax Center of Excellence

kr-fmtaxtcoe@kr.kpmg.com